

#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

발의자 : 강성삼 의원

발의일 : 2021. 11.

## 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,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(안 제2조~제9조)
- 나.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,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~제16조)

## 3. 검토의견

- 본 제정 규칙안은  
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」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,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,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,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,  
  
○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됨.